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가스 사용시설 검사업무 착안시항

< 2018. 10. 10(수), 검사지원처 LP가스부 >

1. 목 적

- 소형저장탱크 및 부속설비^{*}의 사용 중 또는 이동설치(타장소 이전) 시 변경(탱크 추가설치, 기화장치·배관·조정기 교체 등) 발생의 경우 검사 처리 방법과 서류·전산 관리에 대한 착안사항을 안내하고자 함
 - * ① 조립검사를 받은「일체형 소형저장탱크」(이하 "일체형 탱크"라 한다)
 - ② 소형저장탱크 및 부속설비(기화장치, 조정기 등)를 현장조립하여 완성검사 시 내압·기밀시험, 비파괴시험 등을 실시한 시설(이하 "현장조립 탱크"라 한다)

2. 착안사항

- o (검사처리) 현장검사 실시가 원칙. 단, 「액법」상 변경공사 비대상의 경우 정기검사 시 완공도면만 징구하여 처리
 -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는 신청인^{*}의 필요에 의한 검사로 **강제성 없음**
 - * 특정설비(저장탱크, 기화장치) 제조업소, 가스시설시공업자
 - 따라서, 신청인이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
 - 현장검사 실시 후,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 **중복실시 금지**
- ㅇ (서류관리) 기존 서류와 변경내용에 대한 검사서류 합철 보관
- ㅇ (전산관리) "가스피아에 등록", "검사 결재상신 시 첨부"병행
 - 전산화 대상 항목(가스피아 등록, 결재첨부 시)
- ① 용기 지침 제6장제4절 [별표5]의 일체형 조립검사 성적서(해당 검사를 받은 설비의 경우)
- ② 특정설비(탱크, 기화장치 등) 검사합격증명서
- ③ 비파괴시험성적서 ④ 내압·기밀시험 서류 ⑤ 관련 도면
 - 전산화 방법
- ① 가스피아-특정설비관리(개인정보)-검사이력에 전산화 [별첨] 참조
- ② (완성/정기)검사 종료 후 결재상신 시 첨부*
 - * 검사지원처-6232호('18.10.10,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 후 결재상신 시 첨부서류 안내) 참조

3. 자주하는 질문



일체형 탱크 조립검사와 현장조립탱크 검사의 차이점은?

검사종류 내용	일체형 탱크 조립검사	현장조립 탱크 검사 (완성검사)		
근거조항	용기 등 검사업무처리지침 제6장제4절	「액법」제44조제2항		
검사신청 주체	특정설비제조 등록업소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자	가스시설시공업자		
검사목적	신청인의 필요(신속성, 경제성)	특정사용시설의 사용		
검사시기	현장 설치 전	현장 설치 후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전		
검사장소	조립자의 소재지	특정사용시설의 부지		
성적서 효력	동일함			



탱크와 부속설비의 조립 시 일체형 탱크 조립검사와 현장조립탱크 검사 중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?

「일체형 탱크 조립검사」는 특정설비(저장탱크, 기화장치) 제조등록업소, 가스 시설시공업자가 현장시공의 신속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필요에 의해 신청된 검사로 법적 강제성 없음.

따라서 탱크와 부속설비의 조립(최초, 변경) 시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「일체형 탱크 조립검사」는 특정설비(저장탱크, 기화장치) 제조 등록업소와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요청 시에만 실시할 것



일체형 탱크 조립검사 혹은 현장조립탱크 검사를 받은 설비의 사용 중 또는 ○ 3 사용처 변경에 따른 이동설치 시 설비 변경(탱크 추가, 기화기 변경, 조정기 교체 등)이 발생할 경우 검사처리방법은?

- o (사용 중 변경) 「액법」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경공사 해당여부 확인
- ① 변경공사 대 상: 변경완성검사 신청 후 현장검사로 처리
- ② 변경공사 비대상 : 정기검사 시 변경도면(비파괴성적서, 내압 기밀시험 서류, 특정 설비 검사합격 성적서 등)를 징구. 다만. 가스시설시공업자가 「일체형 탱크 조립검사」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시 가능
- o (이동설치 후 변경) 현장조립 검사가 원칙이므로 완성검사로 처리. 다만, 완성검사실시 전 가스시설시공업자가 [일체형 탱크 조립검사] 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시 가능



시설의 최초 완성검사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하면서 **시설검사원이 해야 할** 소형저장탱크 설비의 **전산 관리방법**을 설명해주세요.

○ (최초 완성검사)

탱크 및 부속설비의 조립검사방법	일체형 탱크 조립검사를 받았음	현장에서 조립검사 실시함
	해당 없음	
가스피아 등록	일체형 탱크 조립검사 시 검사원이 가스피아	해당
	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중복등록 불필요	
결재상신 시 첨부	하다	해당

○ (설비변경 있음)

- 변경공사 대상으로 완성검사 실시의 경우

탱크 및 부속설비의 검사방법	현장에서 조립검사 실시함
가스피아 등록 결재상신 시 첨부	해당

- 변경공사 비대상

탱크 및 부속설비의 조립검사방법	일체형 탱크 조립검사를 받았음	정기검사 시 서류 징구
	해당 없음	
가스피아 등록	일체형 탱크 조립검사 시 검사원이 가스피아	해당
	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중복등록 불필요	
결재상신 시 첨부	해당	해당

o (설비변경 없음) 변경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사 시 실시사항 없음

4. 행정사항 (지역본부·지사)

○ 「검사품질의 날」을 활용,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 및 시설검사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토록 교육하여 소형저장탱크 설비의 조립 검사이력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

[별첨] 1. 소형저장탱크 조립검사 관련 규정 1부.

2. 소형저장탱크설비 관련 서류 입력방법 1부. 끝.

별첨 1 소형저장탱크 조립검사 관련 규정

ㅇ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35조제4항

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의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.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○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시행규칙 제71조제1항
-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저장설비(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,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만을 말한다)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
- 2.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
- 3. (생략)
- 4. 가스설비(기회장치,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)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
- 5.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 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
- 용기 등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6장제4절 제12조 [별표4]

제 12조 [검사종류]

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는 검사의 용역사업으로서... (중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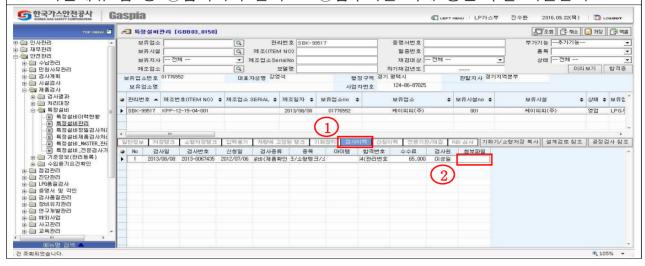
별표 4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6조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8조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설치할 **일체형 저장탱크** 부속설비 및 배관의 조립·시공에 대하여 아래 **신청인의 필요에** 의해 현장 설치전에 입회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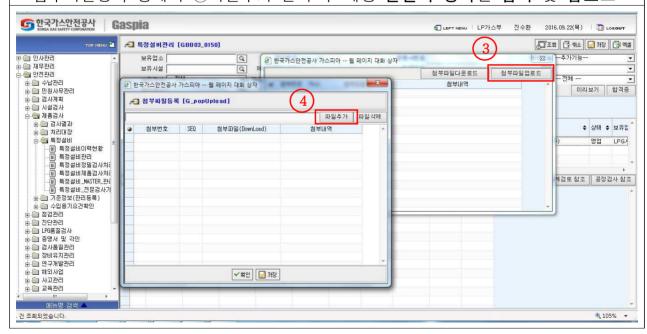
-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8-46조 제2항
- 1. 일체형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소형저장탱크 및 부속설비(기화장치, 압력 조정기, 배관 등)의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 성적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시 설검사 시 소형저장탱크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압·기밀시험, 비파괴시험 등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것은 중복검사를 생략한다.
- 2. (생략)
- 3. 사용이력이 있는 소형저장탱크에 조정기 및 배관을 현장 조립한 경우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.(배관 설치의 경우 가압이 곤란한 단니플 등에 하함)
- 4. 소형저장탱크 및 부속설비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 중 타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시 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.

별첨 2 소형저장탱크설비 관련 서류 입력방법

- 1. (**가스피아 경로**) 안전관리 제품검사 특정설비 **특정설비관리(개인정보**)
 - 하단메뉴 탭 중 ①검사이력 클릭 → ②첨부파일 아래 공란 부분 더블클릭



- (가스피아 경로) 안전관리 제품검사 특정설비 특정설비관리(개인정보)
- 팝업창 생성 후 ③첨부파일업로드 클릭
- 첨부파일등록 창에서 ④파일추가 클릭 후 해당 전산화 항목만 압축 및 업로드



3. (참고사항)

- 압축파일명 : 검사일 탱크관리번호 (예시 : 181001 SBK123456)
- 2대 이상의 탱크를 조립하여 검사한 경우 각각의 특정설비관리번호에 관련 서류 압축파일 업로드*
- * (예시) SBK-11와 SBK-22 조립의 경우 두 특정설비의 검사이력에 압축파일 업로드